

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18조에 의하여, 대한내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(이하 위원회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기능)

본 위원회는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3 조 (구성 및 임기)

1.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, 위원회의 임기는 대한내과학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.
 - 1) 위원장: 대한내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(당연직)이 되며,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.
 - 2) 부위원장 및 간사: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.
 - 3) 위원: 분과별로 안배하여 최소 각 분과에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.
2. 위원회 산하에 내과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, 각 분과별 관리위원이 분과위원회 위원장(당연직)이 되며,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. 부위원장, 간사 및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 4 조 (업무)

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.

1. 내과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, 관리계획 및 업무진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
2.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및 자격갱신에 관한 사항
3.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산하 분과위원회 업무집행의 조정, 지도,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
5.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6.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

제 5 조 (회의)

1. 관리위원회
 - 1) 일 년에 4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,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 - 2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혹은 위임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 - 3)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2. 내과분과위원회
 - 1) 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안에 대해 필요시 각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
 - 2)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사항은 관리위원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 6 조 (운영 세칙)
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 7 조 (부칙)

1. 본 규정은 201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